

의안번호	제 109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2년 10월 31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##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9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2년 10월 3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1. 제안사유

- 충청북도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. 12. 31.로 도래됨에 따라 남북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남북교류를 위한 재원으로 운용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-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(안 제4조제2항)
  - (현행) 2022년 12월 31일 → (개정) 2027년 12월 31일

### 3. 의안전문 : 붙임

#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### 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### 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2022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4조(설치) ① (생   략)</p> <p>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22년 12월 31일</u>까지로 하며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③ · ④ (생   략)</p>	<p>제4조(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2027년 12월 31일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③ · ④ (현행과 같음)</p>

## 관련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### □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

< 기금 「일몰제도」 준수 >

#### ○ 존속기간 연장

- 5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기간 연장 가능
- 이 경우, 기금총괄관리관의 의견을 들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지방의회 의결 필요

※ 기금 존속기간 연장 심의절차 : 기금관리부서 ⇒ 기금총괄관리관 의견 ⇒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⇒ 의회 의결

#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## 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 제4항 제1호

## ○ 사 유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재원인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

## ○ 작성자

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이수현